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까지를 각각 제23조의7부터 제23조의9까지로 하고,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의 순위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등록사항 말소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가 후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에 비하여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치명령 이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의6(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토지 사용을 허용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자”라 한다)의 토지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육안 확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경위, 토지소유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주의 내역,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공중(公衆)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제1항 중 “법 제54조”를 “법 제5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으면”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것
2. 매립시설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3. 그 밖에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의 순</u> <u>위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u> <u>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u> <u>1.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법</u> <u>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u> <u>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u> <u>「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u> <u>등록사항 말소 등으로 확인할</u> <u>수 없는 경우</u> <u>2.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가</u> <u>후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에</u> <u>비하여 해당 부적정처리폐기</u> <u>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u> <u>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u> <u>3.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가</u> <u>부담하여야 하는 조치명령 이</u> <u>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u> <u>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u> <u>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u> <u>다고 판단되는 경우</u> <u>4.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가</u> <u>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u> <u>하여 후순위의 조치명령대상</u>

<신 설>

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
의 조치명령대상자가 협조하
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의6(대집행 비용 감경 기
준)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
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1
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
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토지 사용을
허용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자”라 한다)의 토지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육안
확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
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부적정처리

	<u>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였다</u> <u>고 인정되는 경우</u> 3. <u>그 밖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u> <u>발생경위, 토지소유자의 당해</u> <u>토지에 대한 주의 내역, 부적</u> <u>정처리폐기물이 공중(公衆)에</u> <u>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u> <u>감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u> <u>경우</u>
제23조의5 ~ 제23조의7 (생략)	제23조의7 ~ 제23조의9 (현행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까지와 같음)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 <u>법</u> <u>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u> <u>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u> <u>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u> <u>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u> ② (생략)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 <u>으면</u>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 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 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 <u>법</u> <u>제54조제2항</u>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받 <u>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u> <u>하는지 확인하고</u> ----- ----- ----- -----.

<u><신 설></u>	<u>1.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 될 것</u>
<u><신 설></u>	<u>2. 매립시설 침출수의 누출 등 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피해 가 없을 것</u>
<u><신 설></u>	<u>3. 그 밖에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u>